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0년 9월 6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9월 7일

3. 제안이유

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(문화관광부 고시2000-8호, 2000.7.7)에 따라 충청북도 철인의 영문로고 타입을 로마자 표기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 제3조제2호의 별표2 충청북도 철인의 영문로고 타입 개정

- CHUNGCHONGBUK-DO ⇒ CHUNGCHEONGBUK-DO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상징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○ 이는 문화관광부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고시에 따라 충청북도 철인의 영문 표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모음 " ㅓ"를 영문 "eo"로 표기하기로 함에 따라 충청북도의 "청"자를 CHONG ⇨ CHEONG로 개정

※ 붙 임 : 충청북도상징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